

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주식회사 엠씨넥스(이하 "회사"라 한다)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권한)

- ①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.
- ②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363조의2 제1항, 제542조의6제1항,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.
- ③ 위원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7조에 의거하여 사외이사 후보의 독립성 및 적격성을 검증한다.

제2장 구 성

제4 (구성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'위원' 이라 한다)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한다. 위원의 임기는 당해 위원의 이사 임기와 동일하며, 임기 만료 기타의 사유로 이사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도 자동적으로 상실된다.
- ③ 위원의 사임, 사망 등의 이유로 인하여 제2항의 인원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5조 (위원장)

- ① 위원회는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인 위원중에서 결의로 선정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되고,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한다.
-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3장 회 의

제6조 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7조 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, 24시간 전에 이를 각 위원에게 문서, 전자문서, 구두, 기타 발송 및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8조 (결의 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위원회의 의안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9조 (부의 사항)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외이사후보의 추천
2. 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10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

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외부인사의 회의 출석과 관련 자료의 제출

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1조 (통지의무)

위원회는 결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2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과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13조 (간사)

-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고, 위원장이 정하는 자가 이에 임한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회의 사무전반을 관리한다.

제14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.

부칙

제1조 (시행일)

본 규정은 2021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별첨 1.

사외이사의 자격요건(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 77 조)	해당여부
I. 상법 제 382 조제 3 항	
1.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·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 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·감사·집행임원 및 피용자	
2.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·비속	
3.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·감사·집행임원 및 피용자	
4. 이사·감사·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·비속	
5.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·감사·집행임원 및 피용자	
6.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·감사·집행임원 및 피용자	
7. 회사의 이사·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·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·감사·집행임원 및 피용자	
II. 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	
1. 미성년자, 금지산자, 한정지산자	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	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
4.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(상법 시행령 제 34 조제 3 항)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
5.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(상법 시행령 제 34 조제 4 항)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(특수관계인)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(최대주주) 및 그의 특수관계인	
6.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·집행임원·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(주요주주)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·비속	
<p>7.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(상법 시행령 제 34 조제 5 항) 자</p> <p>(1)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·집행임원·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 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·집행임원·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</p> <p>(2) 다음의 법인 등의 이사·집행임원·감사 및 피용자[사목에 따른 법무법인, 법무법인(유한), 법무조합, 변호사 2 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·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, 합작법무법인,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경우에는 해당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, 외국법자문사를 말한다]이거나 최근 2 년 이내에 이사·집행임원·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</p> <p>가. 최근 3 개 사업연도 중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실적의 합계액이 자산총액(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) 또는 매출총액(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손익 계산서상의 매출총액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100 분의 10 이상인 법인</p> <p>나.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상장회사와 매출총액의 100 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</p> <p>다.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상장회사가 금전, 유가증권,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본금(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말한다)의 100 분의 10 이상인 법인</p> <p>라. 해당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 현재 그 회사가 자본금(해당 상장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)의 100 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</p> <p>마. 해당 상장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</p> <p>바. 해당 상장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</p> <p>사. 해당 상장회사와 주된 법률자문·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, 법무법인(유한), 법무조합, 변호사 2 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·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, 합작법무법인,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, 회계법인, 세무법인,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법인</p> <p>(3) 해당 상장회사 외의 2 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·집행임원·감사로 재임 중인 자</p> <p>(4) 해당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그 상장회사와 법률자문·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(소속 외국법자문사를 포함한다)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</p>	해당없음

(5) 해당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 133 조제 3 항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)하고 있는 자 (6)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(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 제 2 조제 1 호의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해당 상장회사와의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) 잔액이 1 억원 이상인 자 (7) 해당 상장회사에서 6 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할 기간을 더하면 9 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할 자	
Ⅲ. 상법 제 542 조의 8 제 5 항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추천 : 추천받음(), 해당사항이 없음()	

20 년 월 일 부로 당 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사 000 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 77 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상기와 같이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.